

## 전기 Q&A



### ■ KS C IEC 62305 표준과 공통접지

관련조항 \_ KS C IEC 62305

**Q1.** KS가 국가표준규격인데 관계법령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어느 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예를 들어 접지공사의 경우 개정된 KS C IEC 62305는 접지저항값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등전위를 위한 공통접지”를 규정하였는데 관계법령(내선규정, 소방법규, 통신법규, 산업안전관리법규 등)은 폐기된 KS C 9609에 상당부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리업무 진행시 KS를 따라도 되는 것인지? 관계법령이 아무래도 느린데 새로운 기술을 조금 빨리, 먼저 규격화 하고 있는 국가표준규격에 맞추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혹 판례 등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A1.** 임의기준인 국가표준(KS)과 강제기준인 관계법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설계시방 등에 대한 협의 시에 KS 표준이 시방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KS 표준의 적용이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표준과 관계법령이 서로 다를 경우에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예시하신 “등전위를 위한 공통접지”의 경우, 피뢰시스템 국가표준(KS C IEC 62305)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 및 내선규정 제1445-17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A